문화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
정책포럼

문화 분권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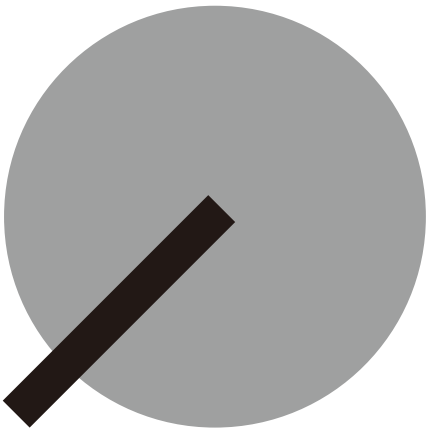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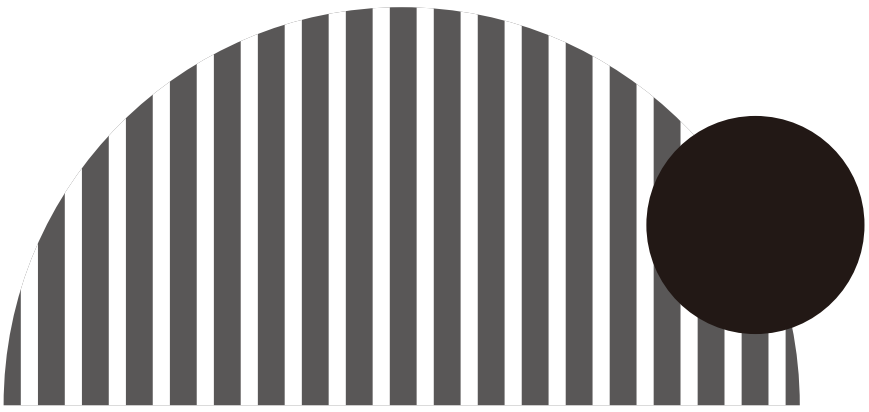

목차

● 5 개요

정책포럼

● 7 발제1.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영수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 17 발제2.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방향
손동혁 |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 33 발제3.
광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황순주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차장

● 47 토론

토론1.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토론2.
조선희 |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토론3.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토론4.
신정호 |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토론5.
박종달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75 1.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소개

● 81 2. 회원기관별 당연직 이사(대표자) 현황

개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포럼

- 문화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 정책포럼 -

문화 분권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일시 2018년 1월 31일(수), 15:00-17:30
장소 세종시 싱싱문화관
주최·주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체 진행 및 사회 : 김희식 |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개회 및 인사말	15:00-15:10	• 환영사 : 인병택 | 세종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 인사말 : 김경식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표	15:10-16:10	• 좌장 : 김보성 | 대전문화재단 문화기획실장 발제1 : 서영수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주제 :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2 : 손동혁 |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주제 :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방향 발제3 : 황순주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차장 주제 : 광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지정 토론	16:10-17:00	• 토론1 :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 토론2 : 조선희 |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 토론3 :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 토론4 : 신정호 |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 토론5 : 박종달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종합 토론	17:00-17:30	

정책포럼

발제1.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영수 |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영수(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의 법률적 출발은 제 3공화국 말기인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법률 2337)」이 제정되고 1973년 7월부터 공연장 및 사적지 입장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부과되었고 그해 10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근래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예술인 복지법(2011), 문화기본법(2013), 지역문화진흥법(2014), 국제문화교류진흥법(2017)에 이르기까지 문화, 예술, 문화예술교육, 문학, 인문학, 문화산업, 영상, 국어, 콘텐츠, 출판, 인쇄, 공예,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대중문화예술, 문화다양성 등 20여개가 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시행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로 예술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창작과 향유, 관광과 문화산업의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강국을 만드는 국가문화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가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문화의 중요성과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 주권과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실현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모든 법률의 모법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2014)」은 오랜 기간 국가주의적 문화행정 체계에서 수혜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지역문화”의 중요성과 실체를 인정하고 미흡하나마 지역 주체의 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화융성」을 3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문화융성위원회를 운영했던 박근혜정부에서 「문화

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졌으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블랙리스트로 탄압하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다는 점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기관과 법률의 모순을 보여준 참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모든 실정법에 최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무시하고 사회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위에 군림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법과 현실의 괴리와 모순이 발생할 때는 법이 가지는 도덕적 규범과 강제력이 상실되고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 법은 그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시스템을 통해 작동하여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만이 법적 가치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별 해석과 미시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련 법률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통해 현행 관련 법률에 기초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행될 때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문화예술 관련한 법률들이 동시대의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의 집행체계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왜곡되고 경직되게 실행되는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전면적으로 법의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문화예술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

○ 문화예술진흥법(1972)

- 제 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총칙 : 목적,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문화이용권의 정의, 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전문인력양성,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건축물 1%미술품
- 문화예술복지 증진 : 장려금 지급, 문화강좌 설치, 학교등의 문화예술 진흥,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도서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복지 증진시책, 문화이용권의 지급관리

- 문화예술진흥기금 : 기금설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용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협의체 구성, 예술의 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8. 제12354(지역문화진흥법)][[시행일 2014.7.29.]]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지역문화진흥법(2014)

- 제정이유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동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정의
- 지역문화진흥 기본원칙 4항,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실태조사,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문화도시 지정, 문화지구 지정관리

-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 지원,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2013)
- 목적, 기본이념, 정의, 국민의 권리(문화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11개항
- 문화 인력의 양성 등,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
- 문화행사,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
-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예술인 복지법(201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비법정) : 예술경영지원센터(2006), 지역문화진흥원(2017)(구 생활문화진흥원, 2016)

3. 문화예술관련 주요 법안의 문제점

역대 여러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법률들이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수시로 만들어지다 보니 각 법률들의 위상과 역할, 기능이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과 최초 법률제정 이후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개정안과 부칙들의 땜질식 처방으로 각 법률들의 연관성과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한층 높아진 문화적 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행 모든 법률들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법적 체계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이 거의 대부분 입법과 법률 시행에 있어서 공급자 중심방식, 수직적 전달체계, 폐쇄적 행정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 중앙과 지역의 이원화, 민간의 자율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방식의 법안이라면 새로운 시대적 문화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공급자 방식에서 플랫폼 방식으로, 수직적 체계에서 네트워크 체계로, 획일적 방식에서 다양성 방식으로, 중앙 관점에서 지역관점으로 분권과 자치를, 팔길이 원칙에서 협치적 파트너쉽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새로운 법률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문화예술, 지역문화,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교육 등 각 법률의 분산과 파편화
- 국가 단위 지속가능한 선순환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정책 부재
- 국가주의적 관점의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의 폐해가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

○ 산재한 문화예술 법률들이 퇴행적 관료주의 문화행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
- 법정 기관이 문체부 각 실국 관료시스템의 하청 집행기구로 기능함으로서 자율성 상실
- 칸막이 문화행정과 정책사업의 연계 부족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심화

○ 법과 행정체계에 근거한 Top down 사업으로 예술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 침해
- 문체부 및 산하기관들의 각종 공모사업 남발로 지역문화의 황폐화와 자생력 저하
- 민관 협치 및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구조
- 국민과 예술인을 직접 대면하는 광역·기초재단, 문화원 등이 상호 협력의 어려움

4.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개선방안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사 법률 통합

- 문화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문화분권과 자치, 문화민주주의, 문화거버넌스의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는 체계로 기존 문화관련 법률 통폐합 추진
- 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인문학 진흥에 관한 법률 통합
- 예술진흥법 : 예술인 복지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학진흥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통합
- 문화산업진흥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영상, 콘텐츠, 출판, 인쇄, 공예, 대중문화 등 통합

○ 문체부의 위상과 역할 재구성
- 문체부는 국가 문화행정의 콘트롤 타워이자 플랫폼 기능 수행
- 문체부 직접 사업 산하 기관과 지역으로 이관
- 정부 타 부처와 협력 강화 및 국가 단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국가단위 사업 추진 :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문화정책 수립, 예산 및 기금의 확보, 국가문화시설 및 기관관리, 통계 및 연구개발, 국가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 개최, 대국민 캠페인 등

○ 각 법률에 근거한 문체부 산하 기관들의 통합 추진으로 국가문화행정 혁신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 영역의 플랫폼 기능으로 재편
- 문화 + 예술 +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 문체부와 협력하여 실제적인 권한과 예산 확보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포괄적 권한과 예산을 지역으로 이관
-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컨설팅, 환류를 통해 지역과의 실질적 협치 시스템 운영
- 법정기관들의 독임제 운영을 탈피해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개방형 위원회 조직운영

- 한국예술위원회 : 예술인 창작지원 + 예술인 복지 + 예술시장 활성화 등
- 지역문화위원회 : 문화향유 + 문화복지 + 문화예술교육 + 지역문화 등
- 문화산업위원회 : 문화콘텐츠 + 영화영상 + 출판 + 인쇄 + 공예 등
  * 한국예술위원회의 국가 독립기구화 논의는 별도

○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광역·기초재단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주도의 문화행정 구현하는 플랫폼 기관으로 위상정립
- 공급자 방식에서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시스템 개편
- 정책의 목표가 창작(생산), 유통(매개), 향유(소비)의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단위의 민간 주도 문화예술시장이 형성되어 자생력이 지속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업 설계
- 4차 산업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화예술종합정보 포털 구축하여 전국 단위 호환 활용
- 단순 공모사업의 틀을 깨고 지역의 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으로 협치적 파트너쉽 형성
-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점진적으로 사업 이관 추진
-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위탁 사업비를 포괄적 출연금 예산으로 바꾸어 지역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창조적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현장에 있는 시민과 예술인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전달하는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자치역량 강화

5. 나오는 말

법은 동시대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보수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은 법의 강제성에 기초한 제재와 규제의 기능도 있지만 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촉진 기능과 자원배분의 기능이 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법률들의 순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못하는 역기능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적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선별적 직접 예산 지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작품의 수월성에 대한 견해,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예술창작 영역의 예술작품에 대한 예산지원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와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예술단체 스스로 자생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향유 영역에서는 국민 여가문화의 대다수가 영화 관람 및 TV시청으로 나타나고 기초예술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빈약한 홍보마케팅과 구매력 있는 예술시장의 부재는 국민들의 기초예술에 대한 괴리감을 증폭시키고 대다수 예술인들의 자생력 저하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 지원금을 마중물로 하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줄이고 자생력을 높이는 지원제도는 창작(생산)-매개(유통)-향유(소비)로 이어지는 예술시장의 재생산 구조를 확립하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률들은 문화, 예술, 문화산업의 세 영역으로 정리하고 통폐합하여 문화기본법을 모법으로 문화분권과 자치, 문화민주주의, 문화거버넌스의 가치와 원칙이 실현되는 체계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선순환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률은 통합성과 연계성, 정합성과 순환성을 담보하여 국가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포럼

발제2.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방향

손동혁 |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방향

손동혁(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목차

1.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재단
2.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방향
3.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 제안

지역문화진흥의 제도적 근거

문화헌장

7. (지역 문화 창달의 원칙) 지역 문화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 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 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 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문화기본법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문화전문기관**
-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분권(devolution)과 분산(decentralization)에 대한 논의 시작
  - 문화예술영역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위원회' 구성 또는 '재단' 설립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보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자체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해졌으며,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해짐
  - 지역문화재단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으로 제도적 근거가 확고해짐
  -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의무화와 새 정부의 지역분권 정책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인 '지역문화진흥'은 지역별 특색에 기반해 문화다양성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문화시설 운영 사업, 문화예술교육 사업, 축제 개최 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전통문화 관련 사업, 국제교류 사업, 기부금품 모집 사업 …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연도별)

- 2017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전체 17개) 문화재단 수는 16개이며, 기초자치단체(전체 226개) 문화재단 수는 71개로 추정됨
- 광역문화재단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두 설립됨
- 기초문화재단은 2004년 이후에 꾸준히 설립되었으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	경기		강원		제주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전남	광주 충북 경남			충남			세종	울산 전북
기초		강릉			부천 청주 구미오성		거제	서울중구 고양 성남	김해	부평 하남 중원 전주	마포 구로 의정부 안산	강남 화성 아산 창원 대구중구 정선 춘천	안양 인제 익산 목포	원주 수성	달성 용인 수원 영암 사천 경주 고래	오산 천안 성북 영등포	종로 군포 당진 청송 청도 평창 대구동구	달서	설동 광진 김포 서초 완주 강진 담양	영월 금정 홍천 포항 밀양	도봉 은평 강북 금천 광명 횡성 거창 인천서구 여주세종 행복북구

출처 : 2015 문화기반시설총람, 2017 행정자치 통계 연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http://koculture.or.kr에서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 17 광역자치단체(1 특별시, 6 광역시, 1 특별자치시, 8 도, 1특별자치도), 226 기초자치단체(75 시, 82 군, 69 자치구)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지역별)

- 71개의 기초문화재단 중 수도권에 31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ex. 인천광역시는 2020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2016년 10월에 발표)
- 대구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다수의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권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서울권	서울 특별시(1) 구(25)	서울문화재단(2004)	중구문화재단(2004) 구로문화재단(2007) 마포문화재단(2007) 강남문화재단(2008) 성북문화재단(2012) 영등포문화재단(2012) 종로문화재단(2013) 서초문화재단(2015) 성동문화재단(2015) 광진문화재단(2015) 도봉문화재단(2017) 은평문화재단(2017) 강북문화재단(2017) 금천문화재단(2017)
경기권	경기 광역도(1) 시(28) 군(3)	경기문화재단(1997)	부천문화재단(2001) 고양문화재단(2004) 성남문화재단(2004) 하남문화재단(2006) 안산문화재단(2007) 의정부예술의전당(2007) 화성시문화재단(2008) 안양문화예술재단(2009) 용인문화재단(2011) 수원문화재단(2011) 오산문화재단(2012) 군포문화재단(2013) 김포문화재단(2015) 광명문화재단(2017) 여주세종문화재단(2017)
인천권	인천 광역시(1) 군(2) 구(8)	인천문화재단(2004)	부평구문화재단(2006) 서구문화재단(2017)
강원권	강원 광역도(1) 시(7) 군(11)	강원문화재단(1999)	강릉문화재단(1998) 정선아리랑문화재단(2008) 춘천시문화재단(2008) 인제군문화재단(2009) 원주문화재단(2010) 평창문화예술재단(2013) 영월문화재단(2016) 홍천문화재단(2016) 횡성문화재단(2017)
충청권	대전 광역시(1) 구(5)	대전문화재단(2009)	
	세종 특별자치시(1)	세종시문화재단(2016)	
	충북 광역도(1) 시(3) 군(8)	충북문화재단(201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01) 충주중원문화재단(2006)
	충남 광역도(1) 시(8) 군(7)	충남문화재단(2013)	아산문화재단(2008) 천안문화재단(2012) 당진문화재단(2013)

		광역	기초
경상권	부산 광역시(1) 군(1) 구(15)	부산문화재단(2009)	금정문화재단(2016)
	대구 광역시(1) 군(1) 구(7)	대구문화재단(2009)	도심재생문화재단(2008) 수성문화재단(2010) 달성문화재단(2011) 대구동구문화재단(2013) 달서문화재단(2014) 형복북구문화재단(2017)
	울산 광역시(1) 군(1) 구(4)	울산문화재단(2017)	고래문화재단(2011)
	경북 광역도(1) 시(10) 군(13)		구미오성문화재단(2001) 경주문화재단(2011) 청송문화관광재단(2013)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2013) 포항문화재단(2016)
	경남 광역도(1) 시(8) 군(10)	경남문화예술진흥원(2010)	거제시문화예술재단(2003) 김해문화재단(2005) 창원문화재단(2008) 사천문화재단(2011) 밀양문화재단(2016) 거창문화재단(2017)
제주.전라권	광주 광역시(1) 구(5)	광주문화재단(2010)	
	전북 광역도(1) 시(6) 군(8)	전북문화관광재단(2017)	전주문화재단(2006) 익산문화재단(2009) 완주문화재단(2015)
	전남 광역도(1) 시(5) 군(17)	전남문화관광재단(2009)	목포문화재단(2009) 영암문화재단(2011) 강진군문화관광재단(2015) 담양군문화재단(2015)
	제주 특별자치도(1)	제주문화예술재단(2001)	

※ 기초문화재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미비하며, 문화기반시설총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도 오류가 확인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년도 2013→2010(경남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설립년도 2006→2009, 전주문화재단 설립년도 2005→2006, 고래문화재단 설립년도 2012→2011, 대구동구문화재단 설립년도 2004→2013 등)

지역문화의 현실

➢지역문화 역량 취약

-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전문인력 양성 기반 취약,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부족, 지역문화 연구 기관 및 연구 인력 미흡, 지역문화예술 정보 및 통계 부족

➢거버넌스의 부재 또는 관주도의 형식적인 거버넌스

-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가?
  -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 관련 공약 취약, 여전한 행정 관료의 주도성

➢시설 건립 중심의 정책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문화 정책의 핵심은 문화기반 시설의 건립이었고, 최근에는 초대형 시설의 건립이 이슈가 되고 있음

➢부족하고, 불안정한 지역문화 재정

- 기본적으로 관련 예산이 적고,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의 기획이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고 있음

지역문화재단의 현실

시도문화재단의 재원 종속성 현황

구분	2015년 시도문화재단 예산 출처[17]						
	의존수입			자체수입			2015년 예산 총계 (①~⑥합계)
	① 지자체 출연금	② 지자체 위탁 사업비	③ 국고[18] (국비, 위원회, 진흥원 등)	④ 기금 / 기본재산 이자수입	⑤ 사업 수입	⑥ 기타	
13개 시도문화재단 예산 총계 (억원)	471.2	1,003.6	1,102.1	111.9	110.1	270.3	3,069.2
1개 재단당 평균액 (억원)	36.2	77.2	84.8	8.6	8.5	20.8	236.1
비중(%)	15.4	32.7	35.9	3.6	3.6	8.8	100.0

자료: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내부 자료(2015. 1월 본예산 편성 기준)

출처 : 김해보·장원호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으로 파악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 2015

지역문화재단의 현실

•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선**
- 돈 먹는 하마
- 단체장의 치적을 쌓아주기 위한 이벤트 사업진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실행 기관(배달사업소)
- 관료화 :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 지원사업의 불공정성 제기
- 독립성, 자율성 이슈

지역문화재단의 현실

• **지역문화재단 내부의 고민들**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공공성과 지역경제와의 균형을 어떤 지점에서 찾아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동체문화와 연계시킬 것인가
-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와의 이해 및 업무 충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지자체의 장이 대부분 재단 이사장 혹은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 지역문화정책의 의제 발굴 및 연구기능의 결과가 지자체 지역문화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지역여건의 이해, 행정과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인재의 양성 및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특정단체 간의 주도권 싸움터가 아닌, 지역문화예술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출처 : 손경년, ‘지역문화재단 운영과 방향에 관한 쟁점, 2010

문화분권

문화분권의 함의
- 문화정책 수립 구조의 다원화 :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 문화시설 다양화 :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 건립
- 지역 문화재정의 확대
-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보충성의 원리

- 위키백과에 의하면 보충성의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보충의 원리(영문 principle of subsidiarity)또는 보충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한해서 ‘차상급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역문화흥을 위한 기본원칙은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 문화분권’, ‘지역의 자율과 책임’,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원칙에 따라 문체부는 지역간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협력의 관점에서 지역이양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광역은 기초로의 분권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사업 추진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상해야 함

지역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걸음 더 시민 속으로…

- **예술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함께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사업 모델 개발**
-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욕구와 필요를 발견하여 문화예술 기획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계획**
- **문화재단(광역, 기초), 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연계를 촉진하여 시민의 생활 속 문화 활동의 편의성 제공(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지역문화재단,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역문화자치를 향해…

- 지역문화 '플랫폼' 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재구성
- 지역문화정책 주체들 간의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 타 지역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더 큰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성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간 교류 촉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혁신

➢ 현황과 문제점

- 한국문화예술교육지흥원 예산의 60%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
-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력 체계의 불안정성에 의한 현장의 혼란
-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서 예술강사 사업의 급격한 양적 성장 이면에 고용불안정(초단시간 근로자), 열악한 처우 문제 발생
- 진흥원과 지역센터간 고용주체 문제 발생
- 문체부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중(2018년 1월 10일 1차 합의문 발표)

➢ 예술가 기반 문화예술교육가로서의 정체성 확립

➢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 문화예술교육 고유의 목적에 맞춰 재원구조 재설계

➢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체계 구축

➢ 사업의 지역 이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조정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자율성 확대

➢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활권 단위 거점 구축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중심 이동

➢ 비 문화예술영역과의 융합교육(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와 연계)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조성 및 주요사업 재구성

➢ 지역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조성

➢ 지역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 재구성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진흥원의 개정 정관 승인 재검토
지역 협력체계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문화 진흥 체계 확립

➢ 제도적 근거 미비 : 생활문화진흥원의 설립 당시에도 제기된 문제

➢ 방식의 문제 : 실무적 필요에 따라 문화부 주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오해(?)

2017.11.23 생활문화진흥원 이사회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명칭변경 의결
2017.11.29 지역문화정책과 주관으로 지역문화진흥 자문회의 개최
2017.12.08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진흥원 개정 정관 승인**
2017.12.11 2017 생활문화센터 성과공유포럼 자료집 등에 주관처로 지역문화진흥원 표기 및 배포
2017.12.15 12월 8일자로 작성된 지역문화진흥원장 명의의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편 안내 글("지역문화가 더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배포
* KTX 등에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광고 집행,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개편 및 만족도 조사, 뉴스레터를 통한 홍보 등

➢ 명칭의 상징성 : 국회와 기재부의 지적에 따라 변경한 명칭이 하필이면…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3.12.30) 과정에서 2개의 별도 안이 발의되어 논란 끝에 반영되지 않은 사안

지역문화진흥원

국민 중심의 “지역분권과 자치, 협업이 강조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2000년 초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지역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두루 살피고,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과제들(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등)을 정리하여 더 많은 지역문화 주체들과 함께 더 많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함

통합문화이용권

질적 제고를 위한 사업의 재기획

➢현황과 문제점

- 양적 확대 일변도로 추진되어 초기에 포함되었던 기획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제기
- 담당 인력의 근로조건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해 사업 역량이 축적되지 않음
- 재정확충 없이 문화복지 위주의 지원사업을 확대한 결과, 현장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은 급감(순수 창작지원금은 2014년 522억원에서 2015년 317억원, 2016년 274억원으로 감소)
- 통합문화이용권의 80%가량이 출판/음악, 영화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음

➢ 재원 조정 및 기획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를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 추진

➢ 지역별 상황에 맞는 기획사업 운영의 자율권 부여

e나라도움

전면 재검토,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도입

➢ e나라도움 시스템 : 기재부가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관리(부정수급, 이중수급 방지 등)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 (2017년)

➢ 제기된 문제점

- 과도한 개인정보 등록 요구 : 지원사업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인건비를 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입력 필요
- 사용자의 편의성 미비 : 많은 예술가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느라 그 전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사업신청, 교부신청,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작업을 중복해서 해야 하고, 지원금 집행도 은행업무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음(72.9%가 불만족, 'e나라도움'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사업포기를 고민해 본적이 있다' 57.5%)
- 현장에서 관리, 감시, 통제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 : 폐지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청와대 국민청원, 문화예술단체 폐지 요구 기자회견 등

e나라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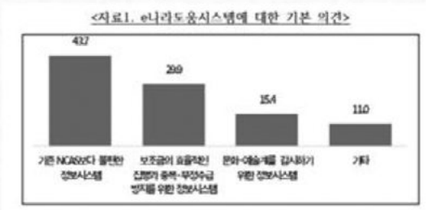

<2017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 , 자료2·3은 복수응답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유은혜 의원실 제공

출처 : 경향신문 2017년 10월 17일

e나라도움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

[청원시작 : 2017-11-27] [청원마감 : 2017-12-27] [청원인원 : 2,544]

노련층을 고려하지 않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제조를 제발 폐지해 주시기를 소망

[청원시작 : 2017-12-12] [청원마감 : 2018-01-11] [청원인원 : 8]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

[청원시작 : 2017-12-29] [청원마감 : 2018-01-28] [청원인원 : 25]

e 나라도움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 2018-01-11] [청원마감 : 2018-02-10] [청원인원 : 3]

e나라도움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청원시작 : 2018-01-16] [청원마감 : 2018-02-15] [청원인원 : 92]

진흥(振興) | [진 : -]

활용 정보:

목록 보기

「명사」

떨치어 일어남. 또는 떨치어 일으킴. 늑흥진(興振).

¶ 문예 **진흥**/**진흥** 사업/산업 **진흥에** 힘쓰다/미력하나마 앞으로는 관청에서 지휘하시는 대로, 우리 농촌의 **진흥**을 위해서 진력하겠으니, 여러분도 한맘 한뜻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바이오.≪심훈, 상록수≫

진흥-하다(振興--) [진 : ---]

「동사」

【(…을)】

떨치어 일어나다. 또는 떨치어 일으키다. 늑흥진하다.

¶ 과학 기술이 **진흥하다** ‖ 무역을 **진흥하다**.

출처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금까지의 ‘진흥’이 ‘떨치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진흥’은 ‘떨치어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발걸음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그리고 모두의 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포럼

발제3.

광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황순주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차장

문화분권과 자치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 정책포럼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경기문화재단의 성찰과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경기문화재단 황순주 차장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문화예술정책 환경의 변화(1)

01 2014년, 문화3법 시행 이후

- **문화 3법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지역문화환경조성을 통한 개인(시민) 문화권 신장과 지역 혁신성, 사회통합성 강화**

✓ 지역문화진흥은 문화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문화국가'의 시대를 예고함

✓ 광역재단의 역할이 예술진흥과 지역문화진흥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재구성됨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2 문화예술전문가 진단 문화정책 우선순위(전문가 214명, 서울연구원)

(1) 새 예술가 발굴.육성의 예술지원정책(16.2%)

(2) 지역공동체 활성화(12.9%)

(3) 문화로 지역재생(11.9%)

(4) 문화기획자 양성(11.4%)

(5) 예술교육과 창의성 제고(7.6%)

✓ 경기문화재단 비전과 미션, 그에 따른 전략적 추진계획에 대한 재검토 시사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3 일상에서의 생활문화 수요 증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문조사,2013)

- **경기도민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경험 전국 최고(23.8%) [전국통계 : 3.9%]**
- **재단은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기획해 오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 환경조성 필요**

✓ 광역과 기초의 역할조정, 재단과 민간 단체의 협력 및 협치 환경의 필요성 대두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4 道정책 등 대내외 변화요구 증대에 따른 재단 역할 확대 필요

-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문화가 핵심)**
- **문화예술분야는 청년의 역동성과 창의력에 바탕한 지역재생사업, 청년창직 등이 핵심**

✓ 지역문화진흥의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핵심 고유 업무의 확충과 역량강화 필요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1 본부 책임경영체제로 정책효과 개선

- **2015년 3월 이전 사무처 체계 내 문예지원실로 편재되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 문화예술진흥의 독자성, 명시성 부족 및 정책효과의 미흡을 조직개편을 통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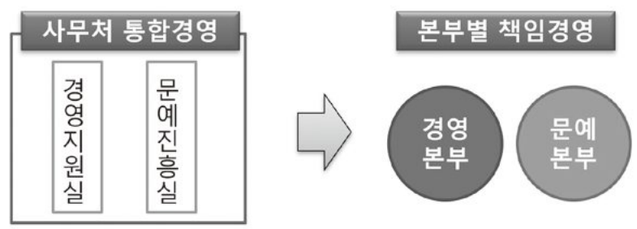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2 지역예술 활동 지원과 향유기회 확대

- **전문예술창작 지원, 지역예술활동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등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
- 공공하는 예술, 예술로 가로지르기, 신화와 예술맥놀이 등 **예술프로젝트 개발 선도**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3 지역문화진흥정책 선도

- **전국 최초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경기도형 생활문화정책 연구,**
- **경기북부 문화예술중점과제 및 핵심사업 개발 등** 독창적 문화정책 연구개발
- 창생공간조성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제작 공간 재생 및 활성화**
-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플랫폼 운영지원
- **미래 경기 동력인** 청년문화창업 창직활동 지원**(북부, 경기상상캠퍼스)**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4 미래지향적 사업개발과 광역 인프라 확충

- 경기상상캠퍼스 : 재생형 청년(생활)문화거점 구축 및 운영
- 경기만에코뮤지엄 : 주민주도형 경기연안 문화콘텐츠 개발
- 경기생활문화센터 **: 광역거점형 생활문화거점 구축**
- 경기천년사업추진 **: 2018년 경기정명천년 기념사업 경기도정 적극연계**
- 미래스마트 서비스기반구축 : 빅데이터, CRM, 스마트관람환경 등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1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독창적 기획사업 개발

- **국가정책전달에 의존하는 예술정책의 한계에 따른 재단의 대응 미흡**
  - ☞ 경기도 생태계 장르기반, 성장주기별 예술정책, 예술교육정책 수립
  - ☞ 자체재원 확보를 통한 독창적인 기획사업 개발 필요
- **창작지원, 예술교육, 문화복지 등 문예진흥 '트로이카' 사업의 공급자 방식 한계 극복**
  - ☞ 공급자 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전면 개편(공모지원보다 도민제안 기획·협력 촉진)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2 분권과 자치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정책 수립

- **기초문화재단 설립 가속화(현재 도내 16개)로 광역재단의 고유한 정책과 발전전략 부재**
  - ☞ 기초-광역 간 역할 위상 제고 필요
-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화정책 수립 절실**
  - ☞ 문화민주주의 기반 경영
- **협치 환경에 대응하는 본부 네트워크 및 전략 미흡**
  - ☞ 자율성을 담보하면서도 전략적인 도정연계를 활성화 할 필요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3 지역문화플랫폼으로서 문예본부 위상 정립

- **새로운 고객인 '문화시민'과의 직접 소통 부족으로 도민 인지도 및 신뢰 저하**
  - ☞ 브랜드 사업 개발, 역점사업 적극 홍보 필요
-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역량과 네트워크 부족**
  - ☞ 행정 프로세스 중심 업무 탈피
  - ☞ 창의력 기반의 현장 기획역량과 유연한 시스템으로 개선 필요
- **정책과 사업의 나열식 확대로 사업간, 부서간 중복 및 비효율 발생**
  - ☞ 주기적인 사업 모니터링
  - ☞ 성장 단계별 전략 수립(R&D, 인큐베이팅, 커뮤니케이션, 협치, 브랜딩, 마케팅 등)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4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재단 상 필요

- **기능적 행정수행 구조** ➡ 창의적 문화기획/예술기획 구조로
- **안전성/체계성 추구 방식** ➡ 젊음+창의+혁신+새로움 추구의 조직문화로
- **단순 직무 전문직** ➡ 다기능/융복합적 전문직으로
- **단선적 업무환경** ➡ 자유롭고 효율적인 '스마트워킹(smart working)'시스템으로
- **재원 직접지원 중심** ➡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용의 간접지원 병행으로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5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의 창조적 역동

제1기 문예본부(2015~2016)	제2기 문예본부(2016~2017)	제3기 문예본부(2018~)
본부체제 시험 : 문예진흥실(행정-진흥 업무 병행)	➡ 본부체제 안정 : 행정지원은 경영본부에서 다시 총괄	● 창의적 문예본부로 혁신 → 독창적 기획사업
지역문화진흥 도입 : 생활문화, 문화재생	➡ 문예진흥-지역문화진흥 양대 축 인식, 기획사업 발굴	➡ ● 자치 분권의 문화시대 → 문화민주주의 정책 수행
광역-기초 간 협의회 구성 정책소위 운영	➡ 광역-기초 간 기획사업 수행 : 전문인력 양성-키움 프로젝트	● 지역문화플랫폼의 본부 → 광역-기초 협력체계 강화
청년문화창작소 기획	➡ 경기상상캠퍼스 개관	● 브랜드 사업 개발 → 경기상상캠퍼스 2.0 시작 → 경기만에코뮤지엄 도약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1 문예본부 책임경영체제 강화

- **문예정책 네트워크 운영 : 내부 정책네트워크 설치 및 기초문화재단 연계**
  - ☞ 예술진흥(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지역문화(생활문화/문화재생)·문화예술교육 등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감안하되, 재단 문예정책에 필요한 분야별 네트워크 운영
  - ☞ 국가 문예정책, 도 문예정책과의 연계 및 재단 정책 판단에 능동적으로 기여
- **문예본부 전략 및 집행기능 강화 : 실질적 본부 총괄기능 운영** ➡ 문예진흥팀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2 브랜드 사업 개발 및 적극 운영

- **경기상상캠퍼스 2.0 추진 및 도약 : 조속한 무상대부 추진**
  - ☞ 입주 청년단체/청년기업 간 창조적 협동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제공
  - ☞ 기 추진 중인 공간운영 외, 추가 공간조성에 따른 상상캠퍼스 중단기 종합계획 완성
- **경기만에코뮤지엄 본격 운영 : 경기만 5대 도시 확대 및 재단 역점사업화**
- **경기천년사업에 따른 '경기천년 라키비움' 성공적 조성**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3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지역문화정책 수행

- **이해관계자 및 도민 참여 숙의형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등 사업프로세스 혁신**
- **지역공동체 기반 문화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 네트워크 및 플랫폼 활성화**
- **경기도형 광역-기초간 협업 환경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재단 사업 일부 이관 등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4 창의적 업무수행을 위한 재단 인재상 변화

- **단순 직무 전문직에서 다기능·융복합적 전문직으로의 변화 유도**
- **자유롭고 효율적인 스마트워킹(smart working) 시스템의 실험**
- **예술진흥정책에서, 컨설팅 및 네트워크 활용의 간접지원정책(안) 마련 및 시도**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1 광역은 문화권, 기초는 생활권으로 자기 정체성 확립

-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할 때 광역은 문화권역으로, 기초는 생활권역으로 이해가 가능
- 광역문화재단은 문화권역을 커버하는 기획(정책) 수립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 기초문화재단은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경기도는 경기(기전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은 광역이 수립하고

✓ 권역별 도시별(중도시 포함) 통합 집행은 기초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 필요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2 광역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구조조정 및 정책기획역량 강화

[브랜드 사업 확산 – 아파트 옆 인문학 사업의 예]

- 도시인문학 프로젝트로 음악, 과학, 역사, 문화, 영화 등 생활 인문학 강좌
- 경기문화재단이 4년째 브랜딩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기획사업
- 경기도형 도시인문학강좌를 통합 기획하고 경기도 예산확보 ➡ 광역문화재단
- 기획과 강사섭외의 제한이 있는 중소도시로 확대 및 협력운영 ➡ 기초문화재단

✓ 광역은 직접사업 축소하고 기초는 예산확보와 집행력 제고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3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협력

[브랜드 사업 협력 – 경기만에코뮤지엄 사례]

- 경기도 연안문화를 재발견하고 이를 주민주도 문화재생하는 광역 프로젝트
- 개별도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광역형 문화자원 활용사업
-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등 연안도시 협력이 필수
- 경기도는 광역 정책을 수립하고 경기문화재단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 개별 도시는 도시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안산, 화성, 시흥)

✓ 경기문화재단 + 기초문화재단 + 시민단체 + 예술집단 등이 협력한 사례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04 광역문화재단간 공동사업으로 초광역 문화정책 주도

- DMZ 활용 문화사업 :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 역사문화 도보길 사업 : 광역문화재단 차원 공동사업으로 확대
  (삼남길, 조선통신사, 정조능행차길, 코리아둘레길 등)
-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 지역문화관점에서 공동 대응 필요
- 지역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 레지던시 교류 등 지역간 예술교류 플랫폼 운영

✓ 문화부 지역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간 협력으로 지역문화정책 주도성 확보

지역문화진흥, 연대와 협력

토론

토론1.

박영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토론2.

조선희 | 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토론3.

김지원 |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토론4.

신정호 |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토론5.

박종달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지역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

□ 지역 문화분권의 방향

○ 지역문화분권은 문화자치로 나아가는 경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즉, 일정한 분권화 과정을 거쳐 물적 토대와 환경을 구축하여 문화자치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시행, 지역문화재단 설립 확대로 지역문화분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열악한 지역재정(따라서 지역문화재정)으로 실질적 문화분권(문화자치)이 실현되기까지는 요원한 상황임.

○ 따라서 지금은 문화분권의 방향성과 전략 수립(로드맵), 분권의 실행을 위한 법제적, 물적 토대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문화분권은 정부 중심 문화정책 전달체계에서 지역단위 자율적 문화생태계 구축으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의미임.

○ 따라서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 가운데 지역 이관/이양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폭 이관/이양해 나가되, 다른 한편으로 지역내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스포츠, 관광을 포괄하는 자율적 정책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지역 문화분권의 주요 과제-법제도를 중심으로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분권의 법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에 '문화분권'의 법적 기반을 명시

- 지역문화재정(가칭 지역문화기금)과 관련 근거 조항 마련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복권 기금의 배분 기준 명시 *17개 시도로 배분
- 지역문화협력네트워크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초단위 생활문화시설 및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내에서 문화분권의 실현
- 지자체 문화행정으로부터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독립성 강화
- 자율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광역단위 문화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분야별 문화정책과 통합적인 문화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 지역문화재정의 안정화 및 재원 운용의 자율성 보장
- 중앙-지역 예산 및 재원 구조의 혁신 : 중앙 기금의 지역 배분 제도화
-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 가칭 '지역문화기금'을 광역단위로 조성 *재원의 깔때기 구조
- 지역문화 재원 운용의 자율성 보장

○ 광역 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거점기관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광역 단위로 문화분권 전략 마련 *광역문화재단 16개
- 광역 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거점기관화를 위한 지원에 집중
-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기구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한광연, 전지연

○ 기초 문화재단의 역할 재정립 및 지역내 문화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 기초 문화재단의 직접 사업과 지원 사업의 균형화 *민간 예술단체 및 생활문화 지원 사업 강화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미디어센터, 꿈꾸는 배움터 등 생활문화시설 네트워크 활성화
-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지역내 문화시설 사이의 협력 지원

.

○ 중앙의 지원기관과 지역문화기관 사이의 협치가 문화분권 성패를 가르는 열쇠
- 문화분권은 각 지역이 처한 구체적 조건 위에서 진행되며, 지역마다의 차이, 어느 부분에서는 격차가 심한 것이 현실
- 이러한 현실 조건을 극복하면서 문화분권을 실현해야 하므로 중앙와 지역 사이의 협업은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음.

누가 문화분권과 자치를 견인할 것인가?

조선희(제주문화예술재단 경영기획본부장)

○ 문화부는 지난 해 12월 문화비전2030 기조발표 「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 6가지 측면에서의 문화정책 전환 예고 : '중앙집원적 문화'에서 '문화자치와 분권으로'
→ '문화기반기설'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사람이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분권으로, 지역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분권으로
- 8대 정책의제에 '지역 문화분권 실현' 포함
- 향후 (가칭)국가문화비전위원회 체계 구축, (가칭)사람이 있는 문화 100인 테이블 구성 계획

○ 문화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구축에 있음

○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은 법 제도, 문화행정서비스체계, 재정과 사업, 주체 등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지역문화재단 사업 및 정체성과 그 역할을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 이들 세 영역은 사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라 할 수 있음

○ 서영수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이 「문화예술관련 법과 제도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는 관련 법률들의 통폐합은 곧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재규정하는 과정이 될 것임
- 기존의 공급자 방식에서 플랫폼 방식으로, 수직적 체계에서 네트워크 체계로, 획일적 방식에서 다양성 방식으로, 중앙 관점의 분권과 자치에서 지역 관점의 분권과 자치로, 팔길이 원칙에서 협치적 파트너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생태계 구축 제안

○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의 발제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방향」에서도 지역문화 '플랫폼' 관점에서 기존사업을 재구성하고, 지역문화정책 주체들 간의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등이 제시되어 있음

○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차장의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에서도 생활문화플랫폼으로서의 지역문화재단 사업 기획의 중요성 및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조정, 재단와 민간 단체의 협력 및 협치 환경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있음

○ 관건은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현장으로부터의, 지역으로부터의 필요성과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그것을 정책 기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방법론이라 생각함. 여기에서 주체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법 제도 및 현재 지역문화재단으로 위탁되고 있는 사업들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를 어떤 채널로 진행할 것인가, 문화부와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음

○ 문화부가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 제시된 향후계획에 (가칭)국가문화비전위원회 체계 구축, (가칭)사람이 있는 문화 100인 테이블 구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음. 지난 해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전국 권역별 청책포럼이 추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발표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임. 상시적 의견수렴 기구도 필요하겠지만 문화분권과 자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직망이 필요한 시점임

○ 지난 해 9월 초 한광연과 도종환 장관과의 면담 시 한광연과 문화부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도 장관의 제안이 있었고, 그 이후 문화부 지역문화정책과와 한광연 사무국은 지역문화 관련기관들로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자문위원회는 문화부와 한광연, 지역문화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아젠다 개발 및 논의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없는 실정

○ 2017년 5월 한광연 제주 총회 정책포럼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은 지역문화재단을 '지방자치제의 적자(嫡子)'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문화정책의 올바른 구현을 위해 지역 스스로 설립하였으니 기본적으로 분권적이며, 그 자체로 지역적이며 지역자율적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중간매개조직으로 협치조직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음

○ 이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계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도 2012년 10월 시도문화재단협의회 발족 시 「지역문화재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국가문화정책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 활성화 관점에서 향후 수년간 광역=문화재단이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지역문화재단협의체에 대한 사업비 국고 지원이 필요하며,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하였음

○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화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추진체를 마련하는 것

문화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방향 토론문

김지원(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 문화예술 재원의 효율성 측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현황>

연도	기금 (억원)	연간 감소액(억원)	연간 감소율(%)	연도	기금 (억원)	연간 감소액(억원)	연간 감소율(%)
2004	5,273			2011	2,631	-357	-11.9
2005	4,929	-344	-6.5	2012	2,522	-109	-4.1
2006	4,548	-381	-7.7	2013	2,395	-109	-4.1
2007	4,336	-212	-4.7	2014	1,547	-848	-35.4
2008	4,091	-245	-5.7	2015	1,110	-437	-28.2
2009	3,739	-352	-8.6	2016	813	-297	-26.8
2010	2,988	-751	-20.1	2017	422	-391	-48.1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6 예산	'17 예산	비 고
□ 지역문화예술지원	24,820	385,27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190	31,138	지특회계 이관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400	7,389	예산 감액

-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엔 35.4%(잔고 1천547억원), 2015년 28.2%(잔고 1천110억원), 2016년 26.8%(잔고 813억원)로 감소폭이 큼
- 2017년에는 감소폭이 48.1%에 달해 422억원만 남게 되며,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잔고가 없어질 예정(**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 500억 전출**)
-'문화융성'의 기치 아래 재정확충 없이 문화복지 위주의 지원사업을 확대한 결과이며, 동시에 현장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은 급감해 문예기금에서 지원한 순수 창작지원금은 2014년 522억원에서 2015년 317억원, 2016년 274억원으로 감소함
- 2017년에는 245억원이 되며 이는 문예기금 전체 집행 예산의 11%에 불과

< '17년도 지역주관처 예산 편성내역 >

(단위: 천 원, %)

구분	총 사업비(A)	카드 사업비(B)	비중 (B/A)	지역주관처			
				인건비	운영비	소계 (C)	비중 (C/A)
서울	15,849,000	15,756,240	99	61,800	30,960	92,760	1
부산	8,316,000	8,241,660	99	58,100	16,240	74,340	1
대구	6,359,000	6,288,660	99	57,940	12,400	70,340	1
인천	5,674,000	5,604,600	99	58,350	11,040	69,400	1
광주	**4,109,000**	**4,071,780**	**99**	**29,180**	**8,040**	**37,220**	**1**
대전	3,229,000	3,197,940	99	24,800	6,260	31,060	1
울산	1,272,000	1,245,540	98	24,030	2,430	26,460	2
세종	294,000	268,380	91	25,000	620	25,620	9
경기	16,241,000	16,150,920	99	58,360	31,720	90,080	1
강원	3,816,000	3,753,560	98	54,940	7,500	62,440	2
충북	3,229,000	3,166,860	98	55,780	6,360	62,140	2
충남	3,718,000	3,683,220	99	27,470	7,310	34,780	1
전북	6,066,000	5,999,160	99	54,940	11,900	66,840	1
전남	5,674,000	5,604,540	99	58,360	11,100	69,460	1
경북	6,261,000	6,200,640	99	48,060	12,300	60,360	1
경남	6,261,000	6,163,800	98	84,990	12,210	97,200	2
제주	1,468,000	1,438,500	98	26,600	2,900	29,500	2
합계	**97,836,000**	**96,836,000**	**99**	**808,710**	**191,290**	**1,000,000**	**1**

* 인건비 책정기준:
  - '16년 지역별 인건비 지급계획액 기준 **3% 인상 적용, 10개월 분**으로 편성
  - 인력 규모 관련 '16년 대비 증감사항은 사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하였음
    • 부산 1명 감, 세종 1명 충, 충북 1명 감
  - 인건비 해당항목: 임금, 제수당 비용, 4대 보험, 퇴직금 (출장비, 자문위원 수당 등은 인건비로 지급해서는 안 됨)

<2016 통계보고서>

단위: 건,원,%

지자체명	발급매수	발급률	전체예산	카드발급예산	카드승인예산	예산대비 이용률	발급카드 대비이용률
서울	238,192	96.75	12,309,700,000	11,909,600,000	10,085,305,140	81.93	84.68
부산	124,026	95.64	6,483,800,000	6,201,300,000	5,507,124,534	84.94	88.81
대구	93,629	95.19	4,917,900,000	4,681,450,000	4,184,523,982	85.09	89.39
인천	83,399	97.02	4,298,000,000	4,169,950,000	3,614,365,471	84.09	86.68

광주	62,193	93.73	3,317,600,000	3,109,650,000	2,861,483,535	86.25	92.02
대전	50,298	100.00	2,514,900,000	2,514,900,000	2,288,272,630	90.99	90.99
울산	19,824	98.71	1,004,200,000	991,200,000	932,359,308	92.85	94.06
세종	3,647	90.95	200,500,000	182,350,000	161,448,579	80.52	88.54
경기	238,508	95.66	12,465,700,000	11,925,400,000	10,501,572,887	84.24	88.06
강원	56,295	90.33	3,116,100,000	2,814,750,000	2,486,518,673	79.80	88.34
충북	44,865	90.69	2,473,600,000	2,243,250,000	2,012,846,669	81.37	89.73
충남	55,446	93.31	2,971,200,000	2,772,300,000	2,471,871,491	83.19	89.16
전북	91,464	94.86	4,821,100,000	4,573,200,000	4,206,660,118	87.26	91.99
전남	83,560	90.66	4,608,200,000	4,178,000,000	3,706,977,353	80.44	88.73
경북	90,383	90.74	4,980,400,000	4,519,150,000	4,186,043,487	84.05	92.63
경남	93,871	96.72	4,852,800,000	4,693,550,000	4,301,927,179	88.65	91.66
제주	21,201	91.12	1,163,300,000	1,060,050,000	940,219,549	80.82	88.70
합계	**1,450,801**	**94.82**	**76,500,000,000**	**72,540,050,000**	**64,449,520,585**	**84.25**	**88.85**

-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책정에 대한 문제 해소.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이용안내 및 홍보, 가맹점 확대 안내 및 홍보, 문자, 전화, 우편홍보 등
  ·문화장터 운영(주민자치센터 및 김치축제 연계 등)
- 광주 기준 운영비 1% 이내, 지자체 홍보비 4,000만원 편성
- 광주 불용예산 2016년 456백만원
- 2016년 기준 약 120억 불용예산 15.7%, 2017년 약 153억 예상(2016년 기준치 적용)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측면

▶ **사업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복지사업인가? 아니면 예술복지?
- 기획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광역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 가중
- 월별, 장르별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기획사업 재도입
- 문화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문화예술향유의 사각지대 포괄방안 마련

Ⅱ. e나라도움

1. 사용의 어려움과 사전교육 부재

-'e나라도움 기능개선에 따른 문화예술계 사용자 설문조사'(2017.9.25.~10.12)

보조금 사용때 불편했던 사항(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e나라도움시스템이용의 어려움'을 꼽았던 문화예술인이 80.1%로 가장 많음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 전체 60%의 응답자가 '시스템 이용방법 교육 및 매뉴얼의 부실', '예치형 보조금 교부/집행시스템의 어려움'(57%)

- 2017년 전면 도입 이전에 사전교육 및 매뉴얼 공유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해가는 진화형(?) 시스템

2. 청원과 성명, 공개토론회

-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2017. 11. 27. → 12. 27.마감 / 2,554명)
  "e나라도움 프로그램을 없애주세요"(연극인)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인들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만들어진 적폐 시스템"(2018.1.11.)
- e나라도움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18. 1. 31.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문화예술계 현실을 반영한 'e나라도움'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개선사항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3. 지역협력형 사업 정산

<시·도문화재단 지역협력형사업 e나라도움 정산 계획>

시·도문화재단	2017 정산	시·도문화재단	2017 정산
강원문화재단	e-나라도움	세종시문화재단	e-나라도움
경기문화재단	e-나라도움	인천문화재단	e-나라도움 후 서류 제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e-나라도움	전남문화관광재단	e-나라도움
광주문화재단	e-나라도움 후 서류 제출	전북문화관광재단	e-나라도움
대구문화재단	e-나라도움	제주문화예술재단	e-나라도움
대전문화재단	e-나라도움	충북문화재단	e-나라도움, 자체 기금은 서류 제출
부산문화재단	e-나라도움	충남문화재단	e-나라도움
서울문화재단	e-나라도움	울산문화재단	e-나라도움

- 2017 정산 광주(서류), 인천(서류), 충북(자체기금 서류)을 제외하고 대부분 e-나라도움 정산
- e나라도움에서 정산 기능(기재부의 입장정리 필요)
- 문체부, 예술위원회, 광역지자체, 문화재단의 정산방식 및 향후 감사관련 원칙 공유

4. 기재부의 e나라도움 개선

- 보조금 집행 간소화를 위해 소액 보조사업의 비예치형 지원
- 보조금 정산시 서류 간소화
- 사용자 매뉴얼 이해하기 쉽게 개선
- 전산 실습교육 및 사용자들이 기능개선을 건의하는 팝업창을 개설·운영
- 윤정식 보조금통합관리단장은 "주로 공무원이 사용해오던 재정시스템이라 일반 국민에게 어렵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100% 서비스 관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수준에 맞춰 쉽고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2018.1.15. e나라도움 기능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

5. 생각해볼 문제

- '국가문화예술시스템(NCAS)'과 'e나라도움'과의 연동은 먼저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가?
- e-나라도움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자 지정 및 제출 요청
  · 2017. 5. 12(금)까지 문체부 재정담당관실 / 12. 14(금)까지 예술정책과로 제출
-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전담 민원지원센터 개소(대학로 예술가의 집, 2017. 12. 22)
- 17개 시·도 e나라도움 안내, 상담, 대행 인력 지원(1월~5월, 9월~12월)

Ⅲ.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의 협업과 역할 분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분 야	사업명	분 야	사업명
연극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전통예술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		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
무용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창작뮤지컬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		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
음악	창작산실)오작교프로젝트		해외 공동제작지원

	자속연주지원	국제 예술 교류 1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창작오페라	창작오페라발굴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아르코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
예술 인력 양성	한국예술아카데미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aPD 무대예술)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국제 예술 교류 2차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공연예술전문인력(스태프)지원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공연 예술 관광 자원화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 개최지원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국제예술교류지원
	ARKO-PAMS 협력지원 (일반공모) 1차, 2차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ARKO-PAMS 협력지원 (프로모션키트) 1차, 2차	소외계층 문화 순회	소외계층문화순회(매칭형)
공연 예술 공통	창작산실)비평지원		소외계층문화순회(발굴형)
	창작산실)창작실험활동지원		소외계층문화순회(소규모순회)
	대학민국공연예술제지원	연극	창작산실)올해의 신작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지원		창작산실)올해의 레퍼토리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13개 분야 40개 사업	

- 시·도 광역문화재단은 국비, 시비, 기금 매칭 지역협력형사업 수행
- 지역협력형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예술위원회 기금, 시,도비 5:5 매칭)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국비, 시비 5:5 매칭, 지특회계)으로 구분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광주의 경우 레지던스프로그램, 문화예술교류,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역문화예술육성(8개 장르 개인 및 단체 소액 다건 지원)로 분류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사업과 광역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유사성 통합, 차이 및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지원체계 정비 필요
-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서 독립성, 자율성 강화 및 위상 제고. 독임제 기관에서 위원회로 전환 취지 복원

초등학교 1학년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할 수 있을까?

-신정호(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이후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관 설립 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표 1> 지역문화재단의 이해

재단의 일반적 필요성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 공공업무의 효율화 - 기존 행정체계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사업 - 수행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업무나 사업 • 민간협력과 자원 동원 - 공공목적달성을 위해 민간역량이나 자원이 필요한 업무나 사업 • 공공복리에의 기여 - 공공복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업무를 지원	•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정책 추진 •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한 문화거버넌스 확립 •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지역문화예술 체계 구축 • 생활문화예술 육성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적 권리 보장"**

그동안 지역 내 문화전달 체계상 주요 역할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들과 예총, 민예총 등 민간단체들이 담당해왔으나, 재단이 중심에 서고 있다.

<표 2> 연도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추이

(단위 : 개)

구분	합계	~00년	01~05년	06~10년	11~15년	16~현재
광역	16	2	3	5	4	2
기초	71	1	8	20	28	14

지역예술인 및 단체 등의 큰 기대감속에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정체성을 갖아야 한다는 요구는 늘어나고 있고, 광역.기초 재단 평균 설립 연수가 8.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 재단의 고유정체성 확보와 함께 광역-기초 재단 간의 협력체계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이 생긴다.

<표 3> 광역·기초 평균 설립연수

(단위 : 개, 년)

구분	기관수	평균 설립 연수
광역	16 (18.4%)	9.6
기초	71 (81.6%)	6.7
합계	87 (100.0%)	8.2

전국에 87개 재단이 있으며, 광역은 94.1%(16개)·기초는 31.0%(71개)가 기관이 설립 되었다. 또한, 광역시·도 내 기초재단은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대구(62.5%) > 서울(56.0%) > 강원(50.0%) > 경기(48.4%) 등은 설립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4> 자치단체수 대비 문화재단(광역·기초) 설립현황

(단위 : 개)

구분		자치단체수	재단	
			광역	기초
특별시	서울	25	1	14 (56.0%)
광역시	부산	16	1	1
	대구	8	1	6 (75.0%)
	인천	11	1	2
	광주	5	1	-
	대전	5	1	-
	울산	5	1	1
도	경기	31	1	15 (48.4%)
	강원	18	1	9 (50.0%)
	충남	15	1	3
	충북	11	1	2
	전북	14	1	3
	전남	22	1	4
	경북	23	-	5
	경남	18	1	6
특별자치	제주	1	1	-
	세종	1	1	-
합계		229	16	70

문화재단 정체성 확립에 있어 문화적 환경 및 인프라 지원 정책에서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의 접근 필요하다. 기존 문화정책 및 사업은 주로 문화환경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

를 이루어,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특성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 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 방안」(2004, 국가인권위원회)연구에서는 문화권 정의 및 범주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4개영역(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 참여권, 문화 환경권)과 18개 세부 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표 5> 문화권의 주요 범주 설정

문화권	분야별	세부영역
문화 자유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이념 표현의 자유
		성표현의 자유
		정보통신 활동의 자유
	학술사상의 자유	학술사상 주장의 자유
		학술사상 출판의 자유
		학술사상의 교육의 자유
		학술사상 단체활동의 자유
	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적 표현의 자유
		종교적 문화활동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언론 취재원의 보호
문화 평등권	양성 문화평등	양성표현의 자유
		양성표현의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양성문화 차별의 금지
		양성문화 평등의 사회적 실현
	성적소수자 문화 평등	성적 소수자 표현의 자유
		성적 소수자 출판 및 제작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활동의 자유
		성적 소수자 문화차별의 제한
	이주 노동자 문화평등	이주 노동자 문화적 차별 금지
		이주 노동자 자녀 교육권 확대
		이주 노동자 문화적 자유
		이주 노동자 문화 다양성 확대
	탈북자 문화평등	탈북자의 문화적 차별 금지 탈북자 자녀 교육권 확대
		탈북자 문화적 적응지원

	장애인 문화평등	장애인의 문화차별 금지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확대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문화차별의 제한
		청소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 참여권	퍼블릭 억세스	시민의 공공문화참여 기회 확대
		시민의 방송제작 참여 기회 확대
	문화교육권	시민의 평생교육권의 확대
		학생들의 문화교육권
		대안적 문화교육권의 확대
	문화공공서비스권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권리
		공공문화장소의 가격할인
		문화정보 서비스권
	문화행정 시민참여권	공공 문화행정 감시권의 확대
		공공 문화축제의 시민참여권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재 보호의 민간 참여확대
		문화재 정책의 시민 참여확대
문화 환경권	주거 문화권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
		주거환경 보호의 권리
		녹지보존의 권리
		주거 근린공원 향유의 권리
	보행권	보행권
		사회적 약자의 보행권의 확대
	문화영향평가제도	난개발로 인한 문화환경 침해 제한의 권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의무화
	문화재 향유권	문화재 보호의 권리
		문화재 향유의 권리
		문화재 교육의 권리

※ 자료원 :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및 실태파악 정책연계 방안", 2004, 65~66쪽 인용

상대적으로 지역 내 문화정책 전달 및 협력체계에 관한 논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광역시·도 내에 기초재단의 설립 비중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 더 크게는 수행기관들의 관심부족으로 전지연·한광연의 협력 및 광역-기초문화재단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논의는 정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앙-광역-기초의 전달체계가 지역 내에서 광역의 정책과 사업을 기초가 위탁하는 위계적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생활예술협력네트워크사업", "종사자 해외연수 프로그램"등의 사례는 타 재단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황순주 차장님의 원고 중에서"광역문화재단의 직접 사업 구조조정 및 정책기획 역량강화"부분은 매우 공감하게 된다. 광역-기초재단의 협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비스전달체계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문체부 문화예술부분 예산 대비 기초문화재단 총 예산은 문체부(문화예술부분) 예산의 15.8%에 육박하고 있으며,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 예산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 6> 문체부 예산(문화예술부문)과 기초문화재단 출연금 규모 비교

(단위 : 억 원, %)

구분	2017년	2016년
문체부 문화예술부문 예산	16,092	15,242
기초문화재단 예산	2,541	2,220
비중	**15.8**	**14.6**

※자료원 : 지자체 홈페이지 자체조사 / 본예산

기초자치단체 주무부서 예산 대비 기초문화재단 출연금 비중은 23.4%를 차지, 지역에서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16년 22.9%→17년 23.4% / 0.5%↑)

<표 7> 지자체 주무부서 예산 대비 기초문화재단 출연금 비중

(단위 : 억 원, %)

구분	2017년	2016년
주무부서예산	10,854	9,689
기초문화재단예산(출연금)	2,541	2,220
비중	**23.4**	**22.9**

※자료원 :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본예산

사업영역 다각화 추세에 따라 기초 종사자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성남, 광명 등)과 문화재단 내 독립부서(센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광명, 용인, 성남 등)속에서 중앙-광역 등 전달체계 논의(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등)에서 기초는 큰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8> 지역문화재단 인력현황

구분	합계	정규직	계약직
광역	1,036명 (100.0%)	575명 (55.5%)	461명 (44.5%)
기초	2,400명 (100.0%)	1,741명 (72.5%)	659명 (27.5%)
합계	**3,436명 (100.0%)**	2,316명 (67.4%)	1,120명 (32.6%)

※자료원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6)

둘째, 지역문화기획 관련 사업(인력양성, 생활문화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2017년 강원권은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춘천.원주가 지역특성에 맞는 실행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강원문화재단은 자체예산을 마련하여 양성된 인력에 대한 실행사업비 및 전체 지역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제공하였다. 즉, 기초가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고, 광역재단이 이에 대한 후속 기획을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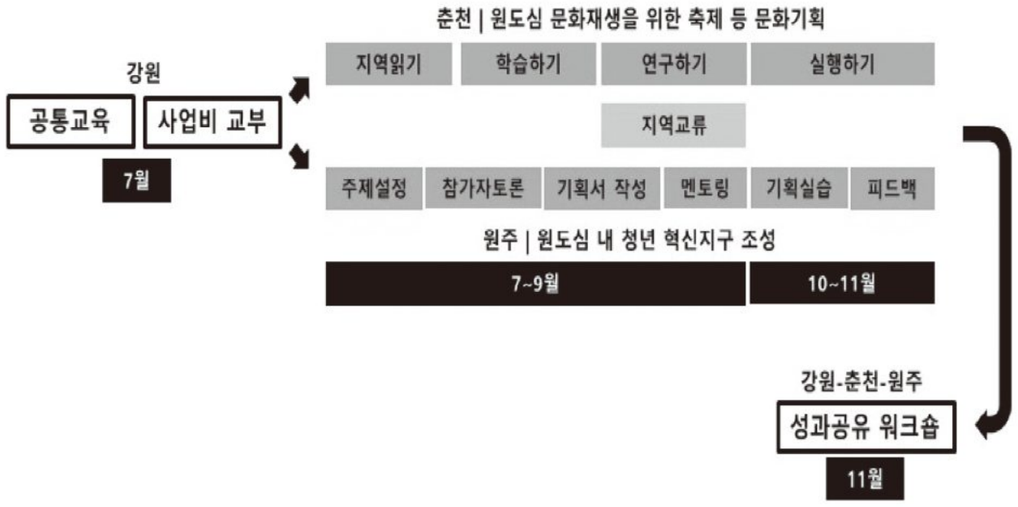

[그림 1] 강원권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실행구조도

[그림 2] 강원권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실행프로젝트(춘천)

셋째, 지역문화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지표 자료를 만드는 협력이 필요하다. 문체부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는 대략 18개 정도이며, 과거 "지역문화통계(06-07년)", "지역문화지수"등이 단발적으로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역문화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표 9> 문체부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 문화셈터 입력 현황

분야	통계명		작성 주기
문화예술	1	문화향수실태조사	2년
	2	국민여가활동조사	2년
	3	예술인실태조사	3년
	4	공연예술실태조사	1년
	5	전국도서관통계	1년
문화산업	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1년
	7	광고산업통계조사	1년
	8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1년
	9	국민독서실태조사	2년
관광	10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월/1년
	11	호텔업운영현황	월/1년
	12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년

	13	국민여행실태조사	반기
	14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년
체육	15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년
	16	국민체력실태조사	2년
	17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1년
	18	스포츠산업실태조사	1년

넷째, 문체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살펴본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재단(광역-기초)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역문화를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은 부족하다(지역문화역량강화 정도).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 및 지역문화기획을 위한 예산을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일선에서 지역문화진흥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기관은 전국 391개
- 그러나, 현실은 상호보완적 느슨한 관계가 아쉬운 상황
- 문체부 지역문화진흥 관련 예산 규모는 22,773백만원
  ※ (16년 7,226백만원, 15,547백만원 증액)

<표 10> 문체부 문화정책관 지역문화진흥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지역문화역량강화	763	763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1,733	1,560
동아시아문화도시선정지원	300	300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3,000	0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480	480
문화전문인력 배치 활용	0	1,000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500	650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0	16,860
도청(경북 및 충남도청)이전터 개발	0	360
코리아문화수도 사업	0	500
영호남 청년문화예술박람회	0	300
안산문화광장활성화사업	150	0
영호남 문화인재 양성지원	300	0
합계	7,226	22,773

※ 문체부, “2018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참조.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1.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실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책 협의기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2012년 10월 26일 발족 이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와 협력 활동을 해온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7년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방향인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결국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관 개요

설립목적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과 격차해소를 통한 문화국가 실현 | 지역문화 균형 발전과 문화자치의 건전한 육성 | 지역문화재단의 연대 강화와 협치를 통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미션/비전

비전 —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핵심주체 및 플랫폼

미션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협력

전략 과제 — 지역문화정책 개발 및 제안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지역문화주체들의 역량 강화

운영원리와 추진전략

호혜와 협력 → 지역 이기주의와 단순 균형배분 논리 극복

창조적 상상 → 지역과 자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휴 협력

열린 거버넌스 → 지역문화생태계의 네트워크 플랫폼 역할

정책적 자주성 → 자체 자원을 활용한 공동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주요 연혁

2012.08 **시도문화재단 대표자 협의체 구성안 최초 합의**

2012.10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결성 및 1차 대표자회의 개최(1대 의장기관 부산 선출)**
한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 선언문 발표
"지역문화발전이 문화복지국가의 핵심이다"

2013.01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채택**
문화정책 세미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방안" 개최

2013.01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제안" 전달(국회 방문)**

2013.05 **시·도 문화재단 1차 정책워크숍 개최**

2013.10 **지역문화진흥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제2대 의장기관 광주 선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융성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2014.0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역 문화현장 토론회(부산) 개최**

2014.03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2014.0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면담 및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광역특별회계 편성 재고 및 예산규모 확대,
지역문화·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 정립,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화진흥 정책예산의 포괄적 보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2014.06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와 지역문화진흥 공동학술행사 개최**
민선6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당면과제 등

2014.1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초안) 쟁점 및 이슈에 대한 정책포럼 개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2015.02 **대표자 회의(3대 의장기관 인천 선출)**

2015.07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과 지특회계 전환편성 관련 문화정책토론회 개최**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총 4회)

2015.11 **한국지역진흥재단 공동협력 정책포럼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진흥 추진 전략>개최**

2015.12 **대표자회의 및 정책워크숍 개최(4대 의장기관 대구 선출)**
문화정책포럼 <지역문화의 현안, 시도문화재단의 역할>개최

2016.04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법 제화 추진 결의 및 창립총회 개최 의결**

2016.05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총회 및 정책포럼 개최(1대 회장 선출)**

2016.11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문화예술교육 정상화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2016.12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기총회 개최(2대 회장 선출)**

2017.02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완료로 사단법인으로 법제화**

2017.04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2017.05 **2017 한광연 정기총회 및 정책포럼 개최**

회원 기관

전국 16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광주문화재단 ‖
대구문화재단 ‖ 대전문화재단 ‖ 부산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
세종시문화재단 ‖ 울산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 전남문화관광재단 ‖
전북문화관광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 ‖ 충남문화재단 ‖ 충북문화재단

시도	재단명	대표자	설립년도	
강원	강원문화재단	김성환 이사장	1999.12.28	
경기	경기문화재단	설원기 대표이사	1997.07.03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성주 원장	2010.02.18	기관통폐합 2013.07.10
광주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	2010.12.27	
대구	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이사	2009.04.16	
대전	대전문화재단	이춘아 대표이사	2009.09.24	
부산	부산문화재단	유종목 대표이사	2009.01.21	
서울	서울문화재단	주철환 대표이사	2004.03.15	
세종	세종시문화재단	인병택 대표이사	2016.11.29	
울산	울산문화재단	박상언 대표이사	2016.12.28	
인천	인천문화재단	최진용 대표이사	2004.12.10	
전남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오영상 사무처장	2009.05.29	
전북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이사	2015.12.24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	2001.01.20	
충남	충남문화재단	신현보 대표이사	2013.12.19	
충북	충북문화재단	김경식 대표이사	2011.11.30.	

사무처

사무처장 : 김희식 ‖ 043-222-5314 ‖ limggukjong@hanmail.net
간사 : 이지은 ‖ 043-222-5008 ‖ sdf0406@nate.com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

회원기관별 당연직 이사(대표자) 현황

이사

김성환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 1953년 서울특별시 출생
- **2014.03 ~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 2010.10 ~ 2013. 03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 2008.06 ~ 2010.10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2008.03 ~ 2008.06 외교통상부 제2차관
- 2006 주오스트리대사관 대사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1951년 서울특별시 출생
- **2016.09 ~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1999.03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2005.12 ~ 2007.12 소마미술관 운영위원장
- 1999.04 ~ 2014.05 (사)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이사장
- 1993.03 ~ 1999.01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성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 1955년 경상남도 거제 출생
- **2017.04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 2014.08 ~ 2017.04 지엘기술(주) 부회장
- 2013.03 ~ 2014.01 진해구청장
- 2012.01 ~ 2013.03 창원시 기획홍보실장
- 2010.07 ~ 2012.01 함안군 부군수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광주광역시 출생
- **2017.09 ~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1 ~ 2012 (재)광주문화재단 아트광주사무국 사무국장과 운영감독
- 2008 ~ 2009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예비사회적기업 '무돌아트컴퍼니' 사업단장
- 2001 ~ 2003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 1959년 경북 구미 출생
- **2017. 12 ~ 대구문화재단 대표**
- 2010 ~ 2012 대구MBC 사장
- 1984 ~ 2009 대구MBC 해설위원, 보도국장, 기자·앵커
- 2013 ~ 2017 계명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일대학교 특임교수
- 2011 ~ 2017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원장
- 2011 ~ 2017 (재)독도재단 이사

이춘아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6.09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9.01 ~ 한밭문화마당 대표
- 2004.04 ~ 2008.12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 1997.04 ~ 1997.07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연구실장
- 1983.09 ~ 1997.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종목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1947년 경상남도 밀양 출생
- **2016.12 ~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1 ~ 2012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2009 ~ 2011 동아대학교 박물관장
- 2005 ~ 2007 동아대학교 교무연구처장
- 2001 ~ 2003 동아대학교 인문대학장
- 1995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1955년 경상남도 마산 출생
- **2016.09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4.04 ~ 2016.08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2010.10 ~ 2014.03 JTBC 편성 본부장, 제작 본부장, 콘텐트 본부장, 대PD
- 2007.07 ~ 2009.02 OBS 경인TV 사장
- 2000.03 ~ 2007.07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1983.03 ~ 2000.02 주식회사 문화방송 프로듀서

인병택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1958년 서울출생
- **2016.10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9.02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 정책실장
- 2006.02 ~ 2008.05 주도미니카 대사관 대사
- 2005.08 ~ 2006.02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 단장
- 1991.01 ~ 1999.03 문화관광부 매체홍보과장
- 2008 도미니카정부 수교훈장
- 2002 홍조근정훈장
- 1997 대통령 표창

박상언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1960년 경기도 남양주 출생
- **2017. 01 ~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2015 ~ 2016 미래콘텐츠문화연구원 원장
- 2011 ~ 2015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제2~3대)
- 2010 ~ 2011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장
- 2008 ~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기획실장/ 경영전략본부장
- 1987 ~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관장/ 예술인력개발원장 등

최진용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1947년 인천광역시 출생
- **2016.12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6.10 ~ 2012.09 의정부예술의전당 대표이사
- 1999.06 ~ 2001.02 문화관광부 국립극장 극장장
- 1998.07 ~ 1999.06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과장
- 1993.03 ~ 1994.05 문화부 예술국 영화과장 등
- 1980.08 ~ 1990.01 문화공보부 행정사무관

오영상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 1961년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
- **2015.07 ~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 2015.02 ~ 2016.11 전남도 가고싶은섬 자문위원
- 2014.02 ~ 현재 광주서구문화원 이사
- 2010.11 ~ 2014.01 해남신문 편집국장
- 2005.11 ~ 2009.06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책홍보담당관
- 1991.06 ~ 2001.10 광주매일신문 사진부장 및 조사부장

이병천 (부회장)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1956년 전라북도 완주군 출생
- **2016.01 ~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2011.03 ~ (사)혼불문학 이사장
- 2007.06 ~ 12 아시아 아프리카 문학페스티벌 집행위원장
- 2007.02 ~ 2011.02 전북작가회의 단체 총괄
- 1985.01 ~ 2014.03 전주문화방송 제작편성국 PD

박경훈 (부회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1962년 제주 출생
- **2016.08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2006 ~ 2016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소장
- 2008 ~ 201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
- 2012 ~ 2015 (사)제주민예총이사장
- 2016 ~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위 부위원장
- 2016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신현보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1953년 충남 출생
- **2017.07 ~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 1996.03 ~ 1999.02 충남연극협회 회장
- 2016.02 ~ 현재 순천향대학교 외래교수
- 2016.03 ~ 현재 충남문인협회 회장
- 2017.02 ~ 한국예총충남연합회 부회장

김경식
(회장)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1960년 충북 출생
- **2016.01 ~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 2003.03 ~ 현재 청주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 2014.05 다큐 극영화 '바세코의 아이들' 제작 감독
- 1988.07 극영화 SF "스파크맨" 감독데뷔(대원동화)
- 현재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사)한국영화인협회 충북지회장, (사)충북영상산업연구소 이사장

감사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1963년 출생
- 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외부강사
-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감사

홍준영

홍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 1970년 출생
- 20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장검사
- 201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1부장검사
- 201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장검사